안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 번호 | 9-167 | | · | | 2023. 5. 18. 안 산 시 장 |
|---|--|---|---|----------------------------------|----------------------------------|
| □ 제약 | 산이유 | | | | |
| 권 | 고사항을 조례 | 부패영향평가 실기에 반영함으로써 기 제영향분석과-3998 | 지방세입 포상 | 금 지급의 | |
| □ 주. | 요내용 | | | | |
| \(\) \(\) \(\) \(\) \(\) \(\) \(\) \(\) | 용수되는 경우 과세권자를 제 또는 경매 등어 E상금 지급 제 | 부최고서를 발송한 · 등에는 포상금 외한 권리자가 * 참가하여 받은 한 (안 제3조제; 수포상금 지급 제외 항제3호) | 지급 제한 (세납자의 재산 배당금으로 체 3항제2호) | (안 제3 <i>조</i> 에 대하여 납액이 장 | 스제3항제1호) 부 실시한 공마]수되는 경우에 |
| □ 개기 | 성조례안 : | 【붙임1】 | | | |
| □ 신 | • 구조문대비 |]표 : 【붙임2 |] | | |
| □ 관계 | ᅨ법령발췌서 |] : 【붙임3】 | | | |
| □ 관 | 선사업계획서 |] : 해당사항 | 없음 | | |
| 에 세 / | 산수반사항 | : 해당사항 없 | 음 | | |
| □ 사 | 전예고(결과) |) : 의견없음 | | | |
| | 입법예고 : 2 | 023. 3. 17. ~ | 2023. 4. 6 | . (21일7 | (1) |
| | 차 참고사항 현행조례 : 방침결정문 : | | | | |

[붙임1]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 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다만, 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정무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실·과 | | 징수과 | | |
|--------|----------------|-----------------|--|--|
| 입 | 실·과장 | 징수과장 소 시 조 | | |
| | 직위·성명 담당·팀장 | 손 석 주 체납행정팀장 | | |
| 안 | 직위 · 성명 | 이 대 순 | | |
| 자 | 담당자 | 이대순 | | |
| | 성명·전화 | (행정 3986) | | |

[붙임2]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지급대상) ①·② (생 략)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 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 제3조(지급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실시한 공매 또는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다만, 배당이의 등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제외한다. 3. 5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에상응하는 정무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제외한다. |